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311호
2.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외 10명
3. 발의일자 : 2021. 4. 1.
4. 회부일자 : 2021. 4. 6.

### II. 제안이유

- 한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왔음.
- 이에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Ⅲ. 주요내용

1.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2. 학교·학생행복지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학교·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4.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Ⅳ. 참고사항

1.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서윤기 의원 외 10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11호로 발의되어 2021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제정조례안은 학생 및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 증진을 통해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최근 국제사회에서 경제성장 외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측정·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sup>1)</sup>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행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 특히 OECD는 각 나라 학생의 학업 성취뿐 아니라 삶의 질 관련 지표도 구축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OECD에서 발표한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8’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의 학업성취도를 기록했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조사 대상 71개 국가 중 65위에 그쳤습니다.<sup>2)</sup>
-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측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 한국방정환재단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7,4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였습니다.<sup>3)</sup>

1) UN ‘세계행복보고서’, OECD ‘더 나은 삶 지수’ 등

2) 보도자료 : 한국 학생 수학은 OECD 최상위, 삶 만족도는 최하위권(중앙일보, 2019.12.3.)

3) 보도자료 : 아이들 ‘주관적 행복지수’ OECD 꼴찌 수준…언제쯤 오를까?(한겨레, 2019.5.14.)

-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행복지수가 비례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과도한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sup>4)</sup> 어린 시기의 삶의 질 수준 차이는 이후 성인이 되어서 더 큰 격차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sup>5)</sup> 학생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행복수준을 파악하고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학생들의 행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학생 행복지수’를 개발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이를 측정·발표하였으나<sup>6)</sup> 이후 중단되었는바, 동 제정조례안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의 행복감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기본원칙, 정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을, 본칙 규정으로 계획 수립(안 제 6조~제8조), 행복지수 등(안 제9조), 행복위원회(안 제10조), 행복 영향평가(안 제11조), 예산 운영(안 제12조), 시범학교(안 제13조), 콘텐츠 등 개발·보급(안 제14조), 행복 증진 교육(안 제15조), 위탁(안 제16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7조)을 규정하는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보도자료 : 韓학생, 수학·과학 성취도 세계 상위권인데 흥미도는 만년 '꼴찌'(매일경제, 2020.12.8.)

5) 「How's Life? : Measuring Well-being」(OECD, 2015)

6) 보도자료 : 서울학생 행복지수 5점 만점에 '3.8'…초>중>고 순(중앙일보, 2012.4.3.)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정의에 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학교”, “학생”, “학교·학생 행복”, “행복 격차”를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학생 행복”을 교직원 등과 학생이 체감하는 ‘일상생활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sup>7)</sup>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보편적인 의미의 행복을 정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지표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학생 행복”과 “행복 격차”는 주관적인 요소로 정의, 특정, 수치화가 어려우므로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136, 2021.4.13.).
- 그러나 “학교·학생 행복”과 “행복 격차”는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행복지수’로 수치화함으로써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실제 OECD 등 국제기구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통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바,  
  
학교·학생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안 제3조에서 “학교·학생 행복”과 “행복 격차”에 대하여 정의한 것은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 3)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7) 표준국어대사전

제3항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책의 유연한 수립·시행을 위해 각 항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sup>8)</sup>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책무에 관한 규정의 표현방식은 그 자치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바,<sup>9)</sup> 기본·시행계획 수립, 행복지표 개발·보급, 행복지수 측정 및 결과 공표 등 동 조례안의 주요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안 제4조 또한 강행규정의 표현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4)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포함 사항을, 제3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 반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6조제3항의 의견 개진 주체를 ‘학교구성원, 전문가 등’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대상을 구체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는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사회도 교육주체로서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와 같은 공식적인 학부모기구 뿐만 아니라 책맘, 풀리스맘, 급식맘 등 학부모단체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 기본계획의 수립에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sup>10)</sup>

8)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9)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0) 현재 “학교구성원”과 관련하여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구성원에 학부모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일반적으로 학교구성원이 학생과 교직원을 의미하고 있고 동 조례안에서 학교구성원에 대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구성원에 학부모를

5) 학교·학생행복지수 등에 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학교·학생 행복지표의 개발·보급과 이를 지수화한 행복지수의 측정, 공표, 계획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 과중, 유사 지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안 제9조를 ‘삭제’ 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학생의 행복 수준은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측정 등이 선행되어야 실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행복지수는 각 지역 간 행복 격차 파악과 해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료됩니다.<sup>11)</sup>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복지표와 관련하여 2011년 ‘서울학생 행복지수’를 개발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측정한 바 있고,([붙임1] 참조)  
현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의 일환으로 ‘청소년 행복지수’를 매년 10월~11월에 조사하고 있습니다.<sup>12)</sup>
- 또한 민간기관에서는 한국방정환재단과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등이 행복지수(삶의 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 서울시교육청 및 민간기관 행복지표

행복지수	행복지표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행복지수’(2012~2013)	학교생활, 가정생활, 자신, 전반적 만족도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나의 삶, 주위 관계, 지역사회, 소속 학교), 사회적 신뢰도(가족, 이웃, 교사)
(한국방정환재단)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 학교생활 만족, 어울림, 소속감, 외로움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삶의 질’	건강, 주관적 행복감,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11) 보도자료 : ‘청소년 행복지수’도 강남3구가 최상위, 강북권3구 8점↓(오마이뉴스, 2021.2.22.)

12) (2019) 2019.10.14.(월) ~ 11.3.(일) 온라인 설문 조사, 청소년 6,247명 참여  
(2020) 2020.11.4.(수) ~ 11.23.(월) 온라인 설문 조사, 청소년 4,393명 참여

- 보건복지부에서도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 업무 가중을 이유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서울시교육청은 ① 2011년에 개발하였던 행복지표의 활용 여부, ② 현재 사용하는 혁신교육지구 행복지표의 활용·확대 여부, ③ 타 기관과의 협력 또는 ④ 타 기관의 행복지표와 차별성을 갖는 지표의 개발 여부 등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6) 학교·학생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학교·학생행복위원회 설치 및 심의·자문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들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위원 구성<sup>13)</sup>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안 제10조를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는 교육감 소속 하에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외 15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각 정책자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도 개선,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 등 주로 총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있는 바,<sup>14)</sup>

13)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14)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기능(참여협력담당관-12806,2020.11.23.)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 교육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학교·학생행복위원회로 하여금 주로 행복지표·지수, 행복 격차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 전문성 측면에서도 동 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들과 중복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제1호에도 전문성을 가진 위원에 대하여 규정<sup>15)</sup>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2020년 1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에 따른 ‘시민행복위원회’를<sup>16)</sup> 무리 없이 구성하였는바([붙임2] 참조) 학교·학생행복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에서 동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7)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학교·학생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 등에 대한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행복영향평가가 기존 영향평가와 그 기능이 중복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시행 과정에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sup>17)</sup>

○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15)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6) 제11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7)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4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음.

- 그러나 기존 영향평가는 인권, 성평등 등 학생의 천부인권적 성격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하는 반면, 행복영향평가는 학생의 사회권과 관련이 있어 그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되며,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기타 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기타 의견으로 ①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sup>18)</sup>은 국민이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다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②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궁극적인 교육활동 목표는 행복 추구보다는 배움과 성장이며 ③ 업무 가중 및 행정력 낭비 가능성 등의 사유로 동 제정조례안의 시행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그러나 ①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2항<sup>19)</sup> 및 「교육기본법」 제27조제1항<sup>20)</sup>에서 동 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부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② OECD와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아동·청소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최상위 목표에 두도록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구축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sup>21)</sup> ③ 전술한 바와 같이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업무 가중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9년 1월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시행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붙임2] 참조)

18)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9) 제34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20)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1)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겨울호)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행복지수」

**□ 개요**

- 서울 초(5~6학년)·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 전국 최초로 5개월에 걸쳐 개발
- 2012~2013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총 4회 조사 실시

**□ 지표 구성 및 측정**

- 초·중등 각 30문항(학교생활만족도 23문항, 가정생활만족도 3문항, 자신에 대한 만족도 3문항, 전반적 행복도 1문항) 온라인 설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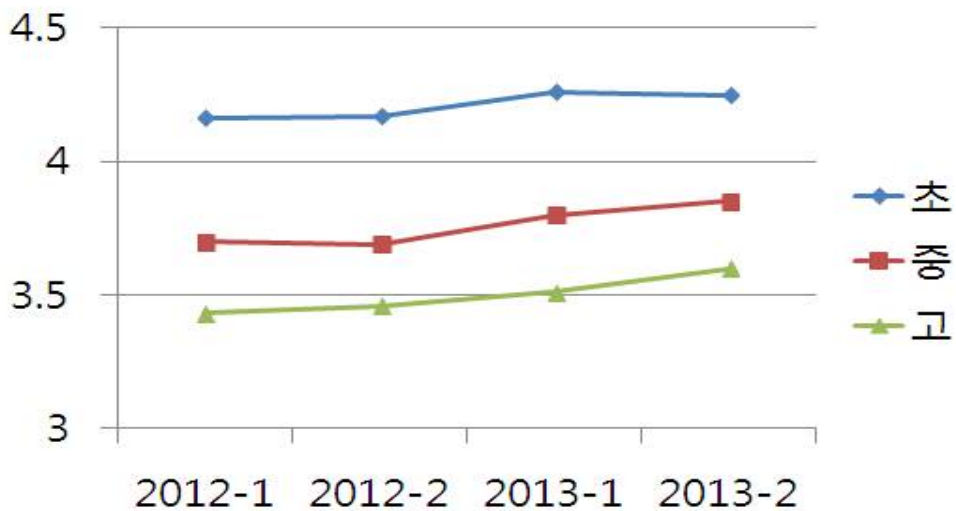
구분	영역	요인	문항 수
초등 학교	학교생활만족도	· 물리적 환경 · 특별활동 · 생활지도 · 교사-학생관계 · 교우관계	23문항
	가정생활만족도	· 가정생활	3문항
	자신에 대한 만족	· 자신에 대한 만족	3문항
	전반적 행복도		1문항
중·고등 학교	학교생활만족도	· 학교생활 · 교사-학생관계 · 교우관계	23문항
	가정생활만족도	· 가정생활	3문항
	자신에 대한 만족	· 자신에 대한 만족	3문항
	전반적 행복도		1문항

○ 각 문항은 5점 만점이며 모든 문항 점수의 평균으로 결과 도출

행복지수(평균)	결과
4.5 이상	난 완전 행복해
3.5 이상 ~ 4.5 미만	난 행복해
2.5 이상 ~ 3.5 미만	아자아자 파이팅
1.5 이상 ~ 2.5 미만	한 번 더 파이팅
1 이상 ~ 1.5 미만	힘내라 힘

## □ 측정 결과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지수가 높게 나타남
- 2년간(2012~2013) 행복지수는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는 행복교육을 지향하며 학교문화를 개선하고자 하였던 서울시교육청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로 사료됨



## □ 서울학생 행복지수 문항

### ○ 초등학교

연번	문항
1	학교시설(건물, 운동장, 교실, 화장실, 도서실, 특별실 등)에 만족한다.
2	학교에 친구들과 놀거나 쉴 장소가 있어서 좋다.
3	급식이 청결하고 질과 양에 만족한다.
4	학교에 생활지도 도움선생님(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들이 있어 좋다.
5	자치활동(학급회, 전교어린이회 등)이 활발해서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6	학교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좋다.
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 좋다
8	학교에서 하는 진로교육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9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문화·예술·체육·수련 활동 등)이 즐겁다.
10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보건 교육, 영양·식생활 교육 등)을 하고 있어 좋다.
11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생활지도(예방교육 및 상담)가 잘 실시되고 있어 만족한다.
12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어 좋다.
13	선생님이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서 좋다.
14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수업해주셔서 좋다.
15	선생님은 내가 수업내용을 이해하도록 끝까지 설명해주셔서 좋다.
16	시험을 보는 방법(수행평가, 쪽지시험, 서술·논술형 등)이 마음에 든다.
17	선생님은 나의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주신다.
18	선생님은 나를 존중해주신다.
19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다.
20	선생님과 대화가 잘 통해서 좋다.
21	친구들과 대화가 잘 통한다.
22	친구들이 있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23	친구들과 사이가 원만해서 좋다
24	부모님이 나를 잘 이해해주셔서 좋다.
25	우리 가족은 화목해서 좋다.
26	나는 집에서의 생활이 즐겁다
27	나는 요즘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28	나의 학업성적에 만족한다.
29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자신이 있다.
30	나는 현재 행복하다.

○ 중·고등학교

연번	문항
1	학교시설(건물, 운동장, 교실, 화장실, 도서실, 특별실 등)에 만족한다.
2	학교에 친구들과 놀거나 쉴 장소가 있어서 좋다.
3	급식이 청결하고 질과 양에 만족한다.
4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서관, 이러닝,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의 활용)이 있어서 좋다.
5	선생님들의 수업방법이 다양하고 효과적이어서 만족한다.
6	선생님은 내가 수업에 뒤처지지 않게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도해줘서 좋다.
7	성적평가 시 다양한 방법(수행평가, 서술·논술형 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만족한다.
8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문화·예술·체육·수련 활동 등)이 즐겁다.
9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보건 교육, 영양·식생활 교육 등)을 하고 있어 좋다.
10	자치활동(학급회, 학생회 등)이 활성화되어 우리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11	학교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좋다.
1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 만족한다.
13	학교에 생활지도 도움선생님(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들이 있어 좋다.
14	내가 원할 때 학교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다.
15	나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하여 진학·진로지도를 잘해주어 만족한다.
16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생활지도(예방교육 및 상담)가 잘 실시되고 있어 만족한다.
17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어 좋다.
18	선생님이 나의 인격을 존중해주셔서 좋다.
19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다.
20	선생님과 대화가 잘 통해서 좋다.
21	친구들과 대화가 잘 통한다.
22	친구들이 있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23	친구들과 사이가 원만해서 좋다
24	부모님이 나를 잘 이해해주셔서 좋다.
25	우리 가족은 화목해서 좋다.
26	나는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한다.
27	나는 요즘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28	나의 학업성적에 만족한다.
29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자신이 있다.
30	나는 현재 행복하다.

## [붙임2]

# 서울시 「서울행복지표」

### □ 추진 경과

- ('19. 1.)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
- ('19. 6.) 행복정책 제도화 방안 도출을 위한 '행복정책 심포지엄' 개최
- ('19.12.) '서울형 행복지표(안)' 수립 : 10개 영역 59개 지표
- ('20. 1.)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
- ('20. 1.)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 제1기 시민행복위원회

- 임 기 : '20. 6. 1. ~ '22. 5. 31. (2년)
- 구 성 : 공동위원장 2명 포함 20명
  - 공동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 공동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발)
  - 당 연 직 :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문화본부장, 복지정책실장, 주택건축본부장(7명)
  - 위 촉 직 : 12명(시의원 2명 포함)

- ('20. 7.~12.)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시행
- ('20.10.) '시민행복위원회' 개최 : '서울행복지표'(10개 영역 61개 지표) 확정

### □ 향후 계획

- ('21. 2.~9.) 시민 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학술용역 추진
- ('21. 3.~12.) 자치구 시민 행복 사업 지원(공모)
- ('21. 3.~12.) 행복정책 네트워크 구축(교육 등)
- ('21.10.) 시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
- ('21.하반기) '행복정책 심포지엄' 개최



## □ 서울행복지표(10개 영역 61개 지표)

구분	영역 (10개)	중 영역	지 표(61개)		
행복한 도시 (22)	주거안정성 (3)	주택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율	
		주거환경	비정상적 거처 거주가구 비율		
	환경 (8)	생활환경	1인당 공원면적	생활환경 만족도	10분 동네 생활편의시설 수
			기후변화 불안도	미세먼지·황사 없는 날 수	온실가스 배출량
		안전환경	생활안전도	야간보행 안전도	
	교통 (6)	교통환경	지하철 혼잡도	교통체증 체감률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자전거 도로율		
		보행환경	보행환경만족도	통근·통학시간	
	교육 (5)	교육환경	국공립 어린이집 수	세대 간 교육이동성	교육환경 만족도
		교육기회	평생학습 참여율	교육기회 충족도	
행복한 시민 (26)	경제생활 (6)	소득과소비	1인당 개인소득 소비생활만족도	소득만족도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자산과 부채	총자산액	부채율	
	일과 생활 균형 (6)	일과 근로조건	고용률	고용의 질	유연근무 도입률
		젠더와 생활	가사·돌봄 부담률 (아동노인 돌봄 포함)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
	건강 (8)	신체건강	건강검진율	건강실천율	건강 삶의 질 지수
			주관적 건강만족도		
		정신건강	자살률	스트레스 인지율	고독사수
	외로움				
	문화 여가 (6)	문화공간	도서관 수	생활문화공간 수	
		문화참여	문화활동참여횟수	문화환경 만족도	
여가활동		연간 여행횟수	여가시간 충분성		
함께 행복한 사회 (13)	사회통합 (9)	시민성	공적 의사결정 참여경험	지역자부심	투표율
			자원봉사 참여율	기부율	
		연대	사회적 지지	이웃신뢰	
	공정과 포용	공정성 인식도	포용성 인식도		
	주관적 안녕감 (4)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	삶의 선택의 자율성	
	정서 경험	긍정적 감정(긍정정서)	부정적 감정(부정정서)		